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개별소비세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추경호 (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5퍼센트에서 3.5퍼센트로 인하하는 조치의 유효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함으로써 소비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고 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진작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관계부처 협의 예정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2022. 6. 7. ~ 10)

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대통령령 제3138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(대통령령 제 31830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, 대통령령 제32248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)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2022년 6월 30일”을 각각 “2022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 안
대통령령 제3138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	대통령령 제3138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
제2조(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) ① 제2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<u>2022년 6월 30일까지</u> 효력을 가진다. ② 제2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<u>2022년 6월 30일</u>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.	제2조(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) ① ----- ----- <u>2022년 12월 31일</u> -----. ② ----- ----- <u>2022년 12월 31일</u> ----- ----- 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	
연 락 처	(044) 215 - 4333